

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위해예방규정의  
기준(제43조의2 관련)

구 분	기 준
1. 제조·저장시설	가. 안전거리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나. 시설 및 구조에 관한 사항 다. 일반설비에 관한 사항 라. 시설방호에 관한 사항 마. 경계요원의 수 및 경계 장비에 관한 사항
2. 제조·저장방법	가. 일반안전에 관한 사항 나. 위험작업 및 저장 일반에 관한 사항 다. 제조시설 내 저장 및 운반허가 없는 운반에 관한 사항 라. 폭발시험 등 시험 및 폐화약류 처리에 관한 사항

비고: 군용총포·도검·화약류의 종류별로 작성한다.